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40190	가맹본부 홈페이지 주소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 1. 25.	대표 이메일 주소	fnb3605@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4.10.		

[STACKBEAN]

정 보 공 개 서

[STACKBEAN]의 가맹본부인 [삼십육점오에프앤비 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삼십육점오에프앤비 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삼2로 181-26, 2층 204호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1533-3002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부 1533-3002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삼십육점오 에프앤비 주식회사	STACKBEAN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2로 181-26, 2층 204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 11. 25.	2020. 12. 1.	오상윤	1533-3002	031-654-3002
	법인등록번호	131311-0246219	사업자등록번호	602-86-0212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오상윤/ 삼십육점오 에프앤비 주식회사	STACKBEAN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2로 181-26, 2층 204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오상윤	1533-3002	031-654-300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조상인/ 삼십육점오 에프앤비 주식회사	STACKBEAN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2로 181-26, 2층 204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오상윤	1533-3002	031-654-3002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STACKBEAN]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STACKBEAN	
상 호	STACKBEAN _____점	
상표(서비스표)		상표등록번호 40-2295368

		상표등록번호 40-1912882
	STACKBEAN	상표등록번호 40-1912883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427,712	716,127	-288,414	237,471	-315,369	-311,778
2022년	646,485	1,280,864	-634,378	375,601	-353,298	-345,963
2023년	742,523	1,762,428	-1,019,904	551,615	-404,518	-385,525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STACKBEAN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오상윤	대표	2020. 12 ~ 현재	STACKBEAN 대표	가맹본부 운영 및 본점 운영
가맹사업 관련 임원	조상인	감사	2023. 1 ~ 현재	STACKBEAN 감사	가맹본부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 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점 상호로 사용	2022. 09. 22.	40-1912882	삼십육점오에프앤비 주식회사	2032. 09. 22.
	가맹점 상호로 사용	2022. 09. 22.	40-1912883	삼십육점오에프앤비 주식회사	2032. 09. 22.
	가맹점 상호로 사용	2025. 01. 02.	40-2295368	삼십육점오에프앤비 주식회사	2035. 01. 0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 상표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중인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II. 가맹본부의 [STACKBEAN] 가맹사업 현황

1. [STACKBEAN]를 시작한 날: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시작일 : 2020년 12월 8일)

2. [STACKBEAN]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삼십육점오 에프앤비 주식회사	STACKBEAN	오상윤	가맹계약 체결 전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삼2로 181-26, 2층 204호

3. [STACKBEAN] 업종

영업표지	업종	
STACKBEAN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음료	커피, 음료, 디저트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STACKBEAN]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3	-	3	3	-	3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3	-	3	3	-	3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STACKBEAN]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해당사항 없음					
2022	해당사항 없음					
2023	해당사항 없음					

6. [STACKBEAN]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STACKBEAN]외에 최근 3년간 가맹사업을 경영하거나,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해당없음	-	-	-	-	-	
서울	-	해당없음	-	-	-	-	-	
부산	-	해당없음	-	-	-	-	-	
대구	-	해당없음	-	-	-	-	-	
인천	-	해당없음	-	-	-	-	-	
광주	-	해당없음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경기	-	해당없음	-	-	-	-	-	
강원	-	해당없음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충남	-	해당없음	-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전남	-	해당없음	-	-	-	-	-	
경북	-	해당없음	-	-	-	-	-	
경남	-	해당없음	-	-	-	-	-	
제주	-	해당없음	-	-	-	-	-	

8. [STACKBEAN]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STACKBEAN]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

니다.

연도	영업종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STACKBEAN]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판촉		(비공개)	7,055	 (비공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52	031-652-802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기업뱅킹>기업서비스>가맹금예치제도>가맹점사업자”를 클릭한 다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STACKBEAN]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가맹비	5,500	가맹계약과 동시	가맹사업법 제10조 사유발생시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오픈상담, 장소선정지원, 계약금 등
교육비	3,300	가맹계약과 동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개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오픈행사비	0	가맹계약과 동시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영업개시 행사를 위한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금을 공제

2)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은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3,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배 이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 맹 비	5,500
교 육 비	3,300
오픈행사비	0
보 증 금	3,000(부가세없음)
합 계	11,8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93,912				(15평 기준)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협력업체 (미지정)	39,100		-	-	직접 인테리어시 제공되는 시방서에 따라 인테리어 시공
익스테리어	협력업체 (미지정)	9,000		오픈전 100%	공사 전 계약 취소	직접구매 불가능
장비류	협력업체 (미지정)	36,740		오픈전 100%	공사 전 계약 취소	직접구매 불가능
집기류	협력업체 (미지정)	4,072		오픈전 100%	공사 전 계약 취소	직접구매 불가능
초도물품	협력업체 (미지정)	5,000		오픈전 100%	공사 전 계약 취소	직접구매 불가능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점 입점 위치 확정 ※ 당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STACKBEAN]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금의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계속가맹금 내역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250	익월 5일	미반환	로열티는, 상호, 상표 사용료에대한 대가를 후불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반환하지않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광고 한달전까지	광고 미집행	광고집행	가맹점사업자에 균분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전단·카드로그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판촉집행 한달전까지	판촉 미집행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물 수량에 따라 책정 납부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가맹본부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협의	미반환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점포환경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 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2023년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관계로,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에 관한 내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본사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반기별 1회	문의:본사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당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30일]전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가맹계약 유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가맹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을 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관계를 탈퇴할 수 있으며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STACKBEAN] 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가입비·점포실사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가맹비의 일부, 교육비, 보증금을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된 후 귀하의 모든 권리는 즉시 소멸되며, 매장 내의 집기 비품 등 [STACKBEAN]의 로고가 사용된 모든 내용물의 처분에 관하여서는 당사의 서면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 종료일까지 상호·간판 등 당사의 로고가 부착된 각종 물품을 처분하지 않고 사용 또는 방치할 경우, 귀하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 종료 **[15일]** 전까지 당사가 제공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전산장치 DB 등 영업 관련 자산 및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칙 등 당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각종 유·무형의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 및 당사의 거래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당사의 영업 비밀, 사업내용, 고객 정보 등 당사의 사업에 피해가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STACKBEAN]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STACKBEAN]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STACKBEAN]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STACKBEAN]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바닐라라떼, 카페모카, 녹차라떼 등으로 가맹점에 개별 공지하는 메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가 현재 취급하는 상품, 용역 중에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 음료, 디저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가맹사업	STACKBEAN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km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 온라인의 배달플랫폼을 통하여 판매 될 경우에는 영업지역이 중복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STACKBEAN'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넷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STACKBEAN'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STACKBEAN]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STACKBEAN]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예→④, 아니오→③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39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법, 비품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갑」이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을」이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갑」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

○ 「을」이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제25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품 및 원·부재료를 별도로 구매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의 대금, 정기납입금, 기타 채무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금 등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등 회계자료를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나 가맹점 운영 주요지침 또는 매뉴얼의 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경영지도를 받음에 있어 성실의무 및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일 업종의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그러한 가맹사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영업을 양도, 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방침등 거부를 선동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 등이 입증되어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당해 가맹점사업자와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서25조 및 40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간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본사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과 가맹본부의 상속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와 보증금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STACKBEAN]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커피, 음료, 디저트를 취급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1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본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STACKBEAN]의 최소 영업시간 및 최소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영업시간	최소 영업일수	비고
08:00 ~ 22:00	연중 무휴	문의: 본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최소 홀 1명	직접 근무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STACKBEAN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사업자간에 균분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사업자간에 균분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공동판촉	협의	협의	행사계획 공고 →	판촉행사 동의

	활동	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팝플렛·전단·카달로그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가능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소속 임원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종료 후 철거·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반일로부터 1일당 금 일십만원(₩100,000, 부가가치세 없음)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액은 금이천만원 (₩20,000,000, 부가가치세 없음)으로 정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에게 추가적으로 손

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 및 상품의 직접조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이천만원정(₩20,000,000원)을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무단 상표 사용기간에는 위약금으로 계약종료 또는 해지일 이후에 판매된 모든 제품 매출의 배액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5) 본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의 2호 내지 4호의 위약벌 규정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의적인 중도해지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가맹본부에게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배상액은 계약 해지 일을 기준으로 남은 계약일 × 금오만원정(₩50,000원)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한도는 금이천만원정(₩20,000,000원)으로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14p~17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 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 운영 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 상 및 내 용	절 차	비 용 부 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 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 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본부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 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 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 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본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에게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STACKBEAN]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물품주문, 구입 고객응대 등	실습교육 이론교육	영업개시 3일전까지 수료	필수 교육
보수 교육	경영상의 필요	실습교육 이론교육	수시	필수 교육
특별 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협의	선택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STACKBEAN]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5일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특별 교육	교육에 따라 상이	교육에 따라 상이	교육비 책정 후 가맹점사업자 통지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 운영자는 당사의 기준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가맹계약서 제40조에 근거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경기	스택빈 평택고덕점	경기도 평택시 고덕여염2길 88, 1층
2	경기	스택빈 평택용죽점	경기도 평택시 용죽5길 10, 1층
3	경기	스택빈 평택지제동삭점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2로 181-26, 107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년 4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175,250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인근가맹점 현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합니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문서를 제공합니다.)

No.	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별첨2] 장비, 집기, 초도물품(정기적)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별첨3]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별첨4] 메뉴 및 가격

번호	메뉴	권장가격	가격홍보방법	비고
1	숏라떼 (Short Latte)	3,300	가격 변경시 공문 및 홈페이지 기재	
2	스택빈카페라떼 (Stackbean Cafe Latte)	3,500		
3	스택빈 슈페너 (Stackbean Spanner)	4,500		
4	아이스크림라떼 (Ice Cream Latte)	5,000		
5	더블에스프레소 (Espresso (Hot))	2,500		
6	롱블랙 (Long Black)	2,800		
7	아메리카노 (Americano)	2,800		
8	MAX 아이스 아메리카노 (Max Americano)	3,800		
9	1.1L 아메리카노 (Americano(Iced))	4,800		
10	카푸치노 (Cappuccino (Hot))	3,500		
11	바닐라라떼 (Vanilla Latte)	4,100		
12	돌체라떼 (Dolce Latte)	4,100		
13	카페모카 (Cafe Mocha)	4,300		
14	카라멜마끼아또 (Caramel Macchiato)	4,300		
15	콜드브루 (Cold Brew)	3,900		
16	콜드브루라떼 (Cold Brew Latte)	4,500		
17	바닐라크림콜드브루 (Vanilla Cream Cold Brew)	4,900		

18	미숫가루라떼 (GrainPowder Latte (Iced))	3,900		
19	오곡라떼 (Five Grains Latte)	3,900		
20	녹차라떼 (GreenTea Latte)	3,900		
21	달고나라떼 (Dalgona Latte(Only Iced))	3,900		
22	초코라떼 (Chocolate Latte)	3,900		
23	민트초코칩라떼 (Mint Chocolate Latte)	3,900		
24	딸기라떼 (Strawberry Latte (Iced))	3,900		
25	에이드 (레몬/자몽/청포도/얼그레이) (Lemon/Grapefruit/Green Grape/Earl Grey)	3,800		
26	아이스티 (Iced Tea)	2,500		
27	MAX 아이스티 (IcedTea(Only Iced))	3,500		
28	1.1L 아이스티 (IcedTea)	4,500		
29	아샷추 피치 (Ice Tea With a Espresso)	3,000		
30	MAX 아샷추 피치 (Max Ice Tea With a Espresso)	4,500		
31	1.1L 아샷추 피치 (1.1L Ice Tea With a Espresso)	5,500		
32	식혜 (Sweet Rice Drink)	2,500		
33	MAX 식혜 (MAX Sweet Rice Drink)	3,500		
34	1.1L 식혜 (1.1LSweet Rice Drink)	4,500		
35	캐모마일/허브민트 (Chamomile/Herbmint)	3,000		
36	과일티 (레몬/유자/자몽 (Lemon/Citron/Grapefruit))	3,300		
37	오렌지자몽 블랙 (Orange Grapefruit Black)	3,300		
38	레몬 얼그레이 (Lemon Earl Grey)	3,300		
39	핑크리치 캐모마일 (Pink Lychee Chamomile)	3,300		
40	딸기피치 루이보스 (Strawberry Peach Rooibos)	3,300		
41	애플시나몬 루이보스 (Apple Cinnamon Rooibos)	3,300		
42	애플피치 우롱 (Apple Peach Oolong)	3,300		
43	플레인퐁/그레인퐁 (PlainPong/GrainPong)	4,300		
44	플레인 요거트스무디 (Plain Yogurt Smoothie)	4,100		
45	딸기/망고/블루베리 스무디 (Strawberry/Mango/Blueberry Smoothie)	4,100		
45	딸기/망고/블루베리 요거트스무디 (Strawberry/Mango/Blueberry Yogurt Smoothie)	4,300		
46	흑당펄 라떼 (Brown Sugar Pearl Latte)	4,300		
47	흑당펄 카페라떼 (Brown Sugar Pearl Cafe Latte)	4,800		
48	흑당펄 밀크티 (Brown Sugar Pearl Milk Tea)	4,800		
49	레드레몬셔벗 (Grapefruit Lemon Sherbet)	4,300		
50	스택빈밀크티(Stackbean Milk Tea)	5,500		
51	밀크빈치노 (Milk Beanccino)	4,300		

52	초코칩빈치노 (Chocolate Chip Beanccino)	4,300		
53	민트초코칩빈치노 (MintChocolate Chip Beanccino)	4,300		
54	쿠앤크빈치노 (Cookie & Cream Beanccino)	4,300		
55	상하목장 아이스크림(컵/콘) (Sanghafarm IceCream(Cup/Cone))	3,500		
56	상하목장 아포가토(플레인) (Sanghafarm Affogato (Plain))	4,000		
57	상하목장 아포가토(달고나/쿠키카라멜) (SanghafarmAffogato (Cookie Caramel/Dalgona))	4,500		
58	마카롱(순우유, 바나나우유, 다크초코, 오레오, 솔티카라멜, 레몬요거트)Macaron	2,900		
59	대만샌드위치(햄앤치즈)(Taiwan Sandwich Ham & Cheese)	2,500		
60	대만샌드위치(카야크림) (Taiwan Sandwich (Kaya Cream))	2,500		
61	대만샌드위치(에그덤뽕) (Taiwan Sandwich (Plenty Of Egg))	2,500		
62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 (Black Forest Cake)	5,900		
63	플레인 구름 카스테라 (Cloud Castella Prain)	4,800		
64	초코 구름 카스테라 (Cloud Castella Chochlat)	6,000		
65	흑임자 구름 카스테라 (Cloud Castella Black Sesame)	6,000		
66	단호박 쑥 가또쇼콜라 (Sweet Pumpkin, Mugwort, Gatto Chochlat)	6,000		
66	프로마쥬블랑 (Fromage Blanc)	5,900		
67	미니 바스크 치즈케이크 (Mini Basque Cheese Cake)	5,500		
68	미니 슈 (Mini Shoe)	4,300		
69	초코 롤 케이크 (Chocolate Roll Cake)	5,700		
70	베이글(플레인,어니언) (Bagel (Plain/Onion))	2,500		
71	베이글(치즈) (Bagel (Cheese))	3,000		
72	폴리크림치즈 (Cream Cheese)	900		
73	애플시나몬 와플 (Apple Cinnamon Waffle)	3,000		
74	돼지바 와플 (Pork Bar Waffle)	3,800		
75	누텔라 크런치 와플 (Nutella Crunch Waffle)	3,800		
76	버터칩(갈릭/허니) (Butter Chip)	3,000		
77	쿠키(초콜렛칩,오트밀레이즌,더블초코칩) (Chcolate Chips/Oatmeal Rays/Double Chocolats Chips)	1,800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